

제257회 거창군의회 정례회

의원 발의 조례안

(1건)

거창군의회

- 목 차 -

의안번호	건 명	쪽수
2021-68	거창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	1

거창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(표주숙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21-68
----------	---------

발의일자	2021. 5. 18.
발 의 자	표주숙, 김종두, 심재수, 권재경, 이재운, 신재화, 김향란, 박수자, 권순모, 이홍희 의원

1. 제안이유

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인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 활용사업의 확대를 군민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을 정함(안 제1조)
- 나. 용어의 뜻을 정함(안 제2조)
- 다. 군수의 책무를 정함(안 제3조)
- 라.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함(안 제4조)
- 마.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정함(안 제5조)
 - 드론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촉진산업, 기반조성사업, 전문인력 양성, 기술지원 및 행사개최, 홍보 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
- 바. 드론활용사업의 확대를 정함(안 제6조)
- 사. 드론체험 및 교육을 정함(안 제7조)
- 아. 드론업무의 위탁을 정함(안 제8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,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
- 다.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미래전략과
- 라. 기타사항
 - 1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 - 2) 입법예고
 - 가) 예고기간 : 2021. 6 1. ~ 6. 7.
 - 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 - 3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 - 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거창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거창군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 활용사업의 확대에 군민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드론”이란 「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.
2. “드론산업”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거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드론산업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제5조(드론산업의 육성) ①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
2. 드론산업 기반조성 사업
3.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
4. 드론사용 사업자(법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)의 창업
· 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
5. 드론 관련 전시회,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
6. 기술 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·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
7. 드론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
8. 드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

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드론산업 육성 사업을 하는 단체 등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.

제6조(드론 활용사업의 확대)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드론을 활용한 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1.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·품질 등의 실적관리
2.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
3. 방재·재난·구조·구호 등의 소방업무
4. 육상 측량 또는 탐사
5. 육상 및 수중 시설물의 안전진단
6.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
7. 비료 또는 농약 살포,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
8.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
9. 드론 스포츠(축구 등) 행사유치 및 관리
10.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

제7조(드론 체험 및 교육) ① 군수는 드론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드론 체험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그 밖에 드론 체험 및 교육에 관한 필요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8조(업무의 위탁) 군수는 제5조제1항, 제6조, 제7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